

의안번호	2219215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G2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 지원 등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3년 또는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에서 2036년까지 9년간 총 8조 9,101억원(연평균 9,9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8~2038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6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조의2)	-3	-3	-3	-3	-3		-17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조제1항)	-3	-3	-3	-3	-3		-15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2조제3항)	-1	-1	-1				-2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8조)	-31	-63	-98	-101	-104	-109	-504	-9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8조의2)	-450	-929	-1,438	-1,485	-1,534	-4,926	-10,761	-1,196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29조의8)	-157	-170	-184	-200	-216		-928	-18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30조)	-2,556	-5,279	-8,177	-10,848	-13,686	-27,819	-68,355	-7,59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30조의3)	-8	-8	-8	-8	-8		-39	-8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91조의19)	-55	-109	-108	-108	-107	-53	-540	-90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92조)	-1,123	-1,123	-1,123	-1,123	-1,123		-5,617	-1,12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2)	-1	-1	-1	-1	-1		-3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22조의3)	-426	-443	-461	-480	-500		-2,310	-462
합계	-4,814	-8,132	-11,605	-14,359	-17,285	-32,907	-89,101	-9,90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2	안 제12조제1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대상: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 특례내용: 이전소득의 50%를 세액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3	안 제12조제3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대상: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 특례내용: 대여소득의 25%를 세액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4	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5	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6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7	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8	안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9	안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10	안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결혼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11	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12	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2	안 제12조제1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	안 제12조제3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	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5	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7	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	안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	안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10	안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11	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12	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 신고는 2028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
 - － 동 제도의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3~4억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
 - － 동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으로 특례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이후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재정수반요인별 세부 추계기간
 - － (2028~2032년) 혼인세액공제
 - － (2028~2034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2028~2036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개정안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 등은 비용추계에 고려하지 않음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국한해서 관측할 수 없으므로, 종사자규모 기준 300인 이하로 제한해 산출한 통계치로 대체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2023~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3년(2023~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7.7억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별 병역복무 기간¹⁾을 감안하여 2027년에 가입한 예금주는 2028~2029년 해지 시, 2031년에 가입한 예금주는 2032~2033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가정
 - 즉, 2027년 1월~6월 적금 가입자는 18개월 뒤인 2028년 7월~12월에 만기 해지하는 것으로 가정
 -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만기 해지자 수, 이자소득금액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가정하에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 동안의 세수효과 추계

□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잠정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1) 육군 18개월,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3년(2023~2025년)간 공제실적 연평균 증가율: 4.1%

3. 상세 추계내역

가.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조의2)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에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 동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동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2024년 세법개정으로 연구개발 출연금의 대상을 기존 정부출연금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제도변화 존재
 - 특례대상:

(2024년 이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출연금 →
(2025년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특례실적) 최근 5년(2021~2025년)간 동 제도에 따른 특례실적은 전액 법인세에서 발생하였으며, 연간 3~4억원 수준으로 집계

- 동 특례는 최근 5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유지

[표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과세특례 실적	3	4	4	3	3
- 소득세	0	0	0	0	0
- 법인세	3	4	4	3	3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 3.4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등 감소효과 추정치: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세수 감소효과	3.4	3.4	3.4	3.4	3.4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7.0억원(연평균 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조의2)	-3.4	-3.4	-3.4	-3.4	-3.4	-17.0	-3.4

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특례로, 최근 특례대상을 확대되는 등의 제도변화 존재
 - 동 제도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발생하는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감면특례를 제공

※ 특허권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 동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으로 특례대상의 기업규모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변화 존재
 - 특례대상의 기업규모 요건: (2021년 이전) 중소기업 → (2022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 (감면실적) 2023~2024년간 동 제도에 따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현행 특례대상의 기업규모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 2023년 이후 감면실적은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조항별로는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주로 발생

[표 5]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23	2024	2025(잠정)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감면실적(제12조, A+B)	5.7	3.7	2.01
- 법인세	5	3	2
- 소득세	0.7	0.7	0.01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실적(제12조제1항, A)	4.8	2.8	-
- 법인세	4.1	2.1	-
- 소득세	0.7	0.7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실적(제12조제3항, B)	0.9	0.9	-
- 법인세	0.9	0.9	-
- 소득세	-	-	-

주: 2025년 잠정실적은 조항별로 구분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추계방법

□ (2025년 실적 추정) 2023~2024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실적 총액의 조항별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세목별·조항별로 추정

- 2025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조항별 감면실적은 2023~202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조항별 실적 비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법인세의 조항별 실적 비중(%):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76.9,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23.1
 - 소득세는 2023~2024년과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6] 2025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감면 추정
(단위: 억원, %)

	2023~2024년(실적)		2025년(추정)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계	8.0	1.4	2.0	0.01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6.2 (76.9)	1.4 (100.0)	1.5	0.01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1.8 (23.1)	-	0.5	-

주: 2025년 실적 추정치는 2023~2024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조항별 실적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법인세 및 소득세 실적을 조항별로 배분한 값임

- (세수효과)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실적 추정치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조항별 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3년(2023~2025년)간 조항별 연평균 실적: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3.0억원,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0.8억원

[표 7] 최근 3년간 조항별 연평균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추정)	연평균 (‘23~’25년)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4.8	2.8	1.5	3.0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0.9	0.9	0.5	0.8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술이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 15.0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기술대여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 2.4억원(연평균 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조제1항)	-3.0	-3.0	-3.0	-3.0	-3.0	-15.0	-3.0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2조제3항)	-0.8	-0.8	-0.8			-2.4	-0.8

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8조)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도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1년 10억원에서 2025년 139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조세지출 실적	10	25	40	57	139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5년 실적 전망치(139억원)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신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하되,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5년 전망치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에 진도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은 해당연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를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2027년 이후 근로제공을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 2025년 기준 연단위 환산액을 연도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기준 연단위 환산액(28억원)은 2025년 조세지출 실적 139억원(잠정)을 5년으로 나누어 산출
 - 외국인기술자는 취업시점부터 향후 10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별 재직기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사증[E-3(연구), E-4(기술지도)]²⁾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5년)을 활용
- 상기 사유로 2027년 이후 매년 국내에서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도 향후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표 1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년 연장에 따른 감면액 발생

(단위: 억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최초 근로 제공	2027	31	31	33	34	35		
	2028		31	33	34	35	36	
	2029			33	34	35	36	37

2) 각 사증에 주요 활동범위 및 해당자는 다음과 같음

구분	활동범위	해당자
E-3 (연구)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 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 인력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등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등
E-4 (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자료: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31억원 등 2028~2034년까지 7년간 총 504억원(연평균 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8~2034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안 제18조)	-31	-63	-98	-101	-104	-72	-37	-504	-72

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8조의2)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으로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향후 20년간 적용되며, 단일세율 적용 시 기타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1년 731억원에서 2025년 3,421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조세지출 실적	731	876	1,047	2,349	3,421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기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추정하고, 이를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 국세청 제출자료 상의 실적 자료는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이므로, 이를 연단위 금액으로 안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최초 근로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21년 최초 근로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22년 최초 근로제공			1년차	2년차	3년차
2023년 최초 근로제공				1년차	2년차
2024년 최초 근로제공					1년차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경제 상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기조 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귀속기준 실적치에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분 추정

- 2024년 귀속 기준 총급여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과세특례 적용 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에 비과세 소득을 합한 연간근로소득에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액공제·감면 등은 적용받지 못함

[표 13] 총급여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현황: 2024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규모	총급여 (과세대상근로소득)		비과세소득 (B)	연간근로소득 (C=A+B)	산출세액 (D=C×19%)
	인원	금액(A)			
1천만 이하	16	100	0	100	19
1.5천만 이하	12	154	0	154	29
2천만 이하	9	165	2	167	32
3천만 이하	24	634	0	634	120
4천만 이하	30	1,064	2	1,066	203
4.5천만 이하	16	694	1	695	132
5천만 이하	8	389	0	389	74
6천만 이하	26	1,502	4	1,506	286
8천만 이하	45	3,162	4	3,166	602
1억 이하	48	4,415	7	4,422	840
2억 이하	1,253	214,412	796	215,208	40,889
3억 이하	1,886	470,621	1,462	472,082	89,696
5억 이하	1,502	581,330	969	582,298	110,637
10억 이하	984	680,807	644	681,451	129,476
10억 초과	354	831,533	249	831,781	158,038
계	6,213	2,790,982	4,140	2,795,119	531,073

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자료임

자료: 국세청

□ 2024년 귀속 기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미적용(6~45% 누진세율 및 기타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시의 결정세액과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세수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2,860억원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적용 인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대상근로소득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산출·적용함
- 기타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세액 공제·감면은 국세청의 「2025년 국세통계연보」 상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1인당 금액을 활용

[표 1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감소분 추정: 2024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규모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수 감소분
	인원	1인당 총급여	미적용 시									적용 시	
			1인당 근로소득 공제 ¹⁾	1인당 기타 소득공제 ²⁾	1인당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²⁾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산출세액	1인당 세액공제 금액 ²⁾	1인당 세액감면 금액 ²⁾	1인당 결정세액 ³⁾	전체 결정세액	전체 산출세액 ⁴⁾	
	(A)	(B)	(C)	(D)	(E)	(F= B-C-D+E)	(G= F×6~45%)	(H)	(I)	(J= G-H-I)	(K= A×J)	(L)	(K-L)
1천만 이하	16	6	4	0.0	0.0	2.3	0.1	0.0	0.0	0.1	2.2	19	-16.8
15천만 이하	12	13	7	1.8	0.0	4.4	0.3	0.3	0.0	0.0	0.0	29	-29.0
2천만 이하	9	18	8	2.5	0.0	7.8	0.5	0.4	0.1	0.0	0.1	32	-31.9
3천만 이하	24	26	9	4.5	0.0	12.7	0.8	0.5	0.3	0.0	0.0	120	-120
4천만 이하	30	35	11	7.0	0.0	17.9	1.4	0.8	1.1	0.0	0.0	203	-203
45천만 이하	16	43	12	8.7	0.0	22.9	2.2	0.9	1.5	0.0	0.0	132	-132
5천만 이하	8	49	12	9.9	0.0	26.5	2.7	1.0	1.6	0.1	1.0	74	-73.0
6천만 이하	26	58	13	11.8	0.7	34.1	3.8	1.2	1.5	1.1	30	286	-257
8천만 이하	45	70	13	14.5	1.3	43.8	5.3	1.3	1.5	2.5	111	602	-491
1억 이하	48	92	14	16.6	3.1	64.0	9.6	1.5	1.7	6.5	310	840	-530
2억 이하	1,253	171	16	18.8	5.4	142	34.1	1.6	2.1	30.3	38,005	40,889	-2,884
3억 이하	1,886	250	18	22.7	18.6	228	66.6	2.0	5.3	59.2	111,684	89,696	21,988
5억 이하	1,502	387	20	27.8	16.8	356	117	2.3	13.4	101	151,394	110,637	40,757
10억 이하	984	692	20	39.9	29.9	662	242	3.0	48.4	191	187,623	129,476	58,147
10억 초과	354	2,349	20	75.7	31.5	2,285	962	6.1	29.7	926	327,941	158,038	169,903
계(억원)											8,171	5,311	2,860

주: 1) 외국인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B)을 기준으로 산출

2) 「2025년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총급여 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금액임

3) 1인당 결정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산출함

4) [표 5]의 D값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5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앞서 산출한 2024년 귀속 기준 세수감소분(2,860억원)을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7년)으로 나누어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7년 이후 매년 국내에서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 향후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시점부터 향후 20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별 재직기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동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심층평가(2023)에 제시된 외국인투자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 － 심층평가에 따르면 소수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근무기간은 6.7년으로 조사됨
 - 상기 사유로 2027년 이후 매년 국내에서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향후 7년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

[표 1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분 발생

(단위: 억원)

		세수감소분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최초 근로 제공 시점	2027	450	464	479	495	511	528	545		
	2028		464	479	495	511	528	545	563	
	2029			479	495	511	528	545	563	581

(3) 추계 결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450억원 등 2028~2036년까지 9년간 총 1조 761억원(연평균 1,1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8~2036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3년 연장(안 제18조의2)	-450	-929	-1,438	-1,485	-1,534	-1,584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1,635	-1,126	-581	-10,761	-1,196	

마.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과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형태로 시행 중

○ (개정연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12.24. 신설된 규정으로 2022.12.3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8.12.24.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 2020.12.29. 일부개정: 2022.12.31.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상향(중소 30%, 중견 15%)
- 2022.12.31. 일부개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육아휴직 복직자 수에 기업규모별 공제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공제금액: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적용요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적용
- 배제규정: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미적용

□ (감면실적)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84.5억원 수준

[표 17]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실적: 2024년

(단위: 억원)

기업규모	신고 법인수	금액
중소기업	258	45.0
중견기업	138	39.5
합계	396	8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추계방법

- 2024년 세액공제 실적에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결합하여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 규모를 추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중견기업에 국한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을 관측할 수 없으므로, 상시고용자 수 기준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
 - 세법상 기업규모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등이 판정요소임
 - 「일가정양립실태조사」의 종사자규모별 육아휴직복귀율의 평균값을 적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5년(2021~2025년) 증감율은 종사자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편임
 -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³⁾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함

[표 18]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종사자규모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환산 증감률	
						'21~'24	'21~'25
300인 미만	61,200	73,943	72,710	77,783	110,767	8.3	16.0
300인 이상	49,355	57,141	53,298	54,744	73,560	3.5	10.5
합계	110,555	131,084	126,008	132,535	184,329	6.2	13.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연도별 통계

3) 급여의 일부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에서 육아 휴직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육아휴직 후 복귀율)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연도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 종사자규모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이므로,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적용

[표 19] 육아휴직 후 복귀율

(단위: %)

종사자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간평균
300인 미만	85.6	82.4	89.4	79.4	80.1	83.4
300인 이상	94.1	96.7	96.6	99.1	92.3	95.8

주: 복귀율은 복귀 후 지속근무 및 단축근무 요청의 빈도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감면세액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5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결합하여 추계

○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공제액은 기준연도 금액에 2024년 대비 복귀율(83.4%/80.1%)를 반영한 뒤, 이후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8.3%)만큼 증가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이에 따라, 다음 해에는 기준연도 대비 약 112.7%, 2년 후에는 약 122.1% 수준이며, 이후에도 매년 동일한 증가율(8.3%)이 적용

－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2025년의 급격한 증가는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반영하고, 이후 기간에는 2021~2024년의 연환산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

[표 20] 신고연도 기준 감면세액 추정치: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중소기업	83.7	90.6	98.2	106.3	115.2
중견기업	73.5	79.6	86.2	93.4	101.1
합계	157.1	170.2	184.4	199.7	216.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8년 157.1억 원 등 5년간 총 927.7억 원(연평균

185.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5년간 적용되므로, 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2032년까지 발생

[표 2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8~2032년

(단위: 억 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	-157.1	-170.2	-184.4	-199.7	-216.3	-927.7	-185.5

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30조)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⁴⁾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하여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1년 8,397억원에서 2025년 1조 1,638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2021~2025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액	8,397	9,667	9,609	11,384	11,638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신고된 감면액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감면액은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이므로, 이를 전체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청년 (5년간 감면)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21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22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2023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2024년 취업자					1년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감면액(2024년 귀속소득)을 연단위로 환산 후 연도별로 배분하며,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 감면을 70%대상(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감면신고액: 1,013억원
 - 감면기간(3년)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2024년 귀속기준 338억원)으로 계산
- 감면을 90%대상(청년) 감면신고액: 9,926억원
 - 감면기간(5년)으로 나누어 연단위 환산액(2024년 귀속기준 1,985억원)으로 계산

[표 2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른 감면액 발생

(단위: 억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27년 취업자	372	384	396						
2028년 취업자		384	396	409					
2029년 취업자			396	409	422				
2030년 취업자				409	422	436			
2031년 취업자					422	436	450		

청년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27년 취업자	2,185	2,256	2,329	2,405	2,484				
2028년 취업자		2,256	2,329	2,405	2,484	2,565			
2029년 취업자			2,329	2,405	2,484	2,565	2,648		
2030년 취업자				2,405	2,484	2,565	2,648	2,735	
2031년 취업자					2,484	2,565	2,648	2,735	2,824

(3) 추계 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2,556 억원 등 2028~2036년까지 9년간 총 6조 8,365억원(연평균 7,5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8~2036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년 연장(제30조)	-2,556	-5,279	-8,177	-10,848	-13,686	-11,131	-8,395	-5,469	-2,824	-68,365	-7,596
청년 외	-372	-767	-1,188	-1,227	-1,267	-872	-450			-6,144	
청년	-2,185	-4,512	-6,988	-9,621	-12,419	-10,259	-7,945	-5,469	-2,824	-62,221	

사.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30조의3)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업원의 근로단축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과세특례

- 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10%와 임금보전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 임금삭감액 공제: (직전 과세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1인당 임금총액)× 상시근로자수×10%
 - 임금보전액 공제: (해당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직전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105%)×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해당 중소기업의 임금이 삭감된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50%
 - 연간 1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3년 10억원에서 2025년(잠정) 5억원 까지 감소

- 최근 3년(2023~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7.7억원

[표 2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3~2025년(잠정)
(단위: 억원)

	2023	2024	2025(잠정)	연평균
소득세	7	4	4	5.0
법인세	3	4	0.8	2.6
계	10	8	5	7.7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3년(2023~2025년)의 연평균 감면액(7.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26] 신고연도 기준 감면세액 추정치: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소득세	5.0	5.0	5.0	5.0	5.0	25.0	5.0
법인세	2.6	2.6	2.6	2.6	2.6	13.0	2.6
합계	7.7	7.7	7.7	7.7	7.7	38.5	7.7

(3) 추계결과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7.7억 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38.5억 원(연평균 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등 (안 제30조의3)	-7.7	-7.7	-7.7	-7.7	-7.7	-38.5	-7.7

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91조의19)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전역 후 취업활동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복무 중 월 55만원 한도⁵⁾ 납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 14%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 세율 10%로 부과되나(「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5) 2024년까지 월 최대 40만원

[표 28]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조세지출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 (실적)	2021~2024 연평균 증가율
비과세 이자소득	119.8	128.9	315.5	593.0	70.4
조세지출	16.8	18.0	44.2	83.0	

주: 조세지출액은 비과세 이자소득금액에 이자소득세율(14%)을 적용한 금액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금리(기본금리 5%p + 우대금리) 더해 재정지원을 통해 1%p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026년 100%)을 추가로 지원
 - (이자) 기본금리인 은행이자율 5%에 추가하여 정부지원분 1% 지원
 - (원리금) 납입액에 비례하여 2026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정부지원분 포함)의 100%를 추가 지원(매칭지원금)

[표 29]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026년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33%	71%	100%	100%

자료: 국방부

(2) 추계 방법

- 향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자 수 변화 및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자소득금액 추정 후, 해당 이자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분 추정
 - 2024년 귀속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실적치에 가입대상자 수 및 평균 납입금액 증가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 추정
 - 2022~2024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 수(현역 입영자 수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이에 따라 향후 적금 가입자 수도 매년 0.8%씩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5년 평균 납입금액은 납입한도 인상률(40만원→55만원, 37.5%)만큼 증가하

고, 이후에는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5년(1월~12월) 납입한도 확대에 따른 납입금액 증가 효과는 18개월 뒤인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⁶⁾
- 은행별 적용금리(기본금리 5%p + 우대금리)가 상이하므로 이자율은 2024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2021	2022	2023	2024	2022~2024 연평균
현역 입영자 ¹⁾	215,754	186,201	187,188	185,866	186,418
사회복무요원	36,459	30,512	29,991	27,199	29,234
합계	252,213	216,713	217,179	213,065	215,652
(증가율)	(7.0)	(-14.1)	(0.2)	(-1.9)	(-0.8)

주: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인 대체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1) 징집 및 모집 입영자를 의미하며, 징집인원은 육군 징집병, 상근예비역(육군, 해군, 해병)을 포함
자료: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표 3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비과세 이자소득	588	692	795	788	782	775	768	762	378
조세지출	82	97	111	110	109	108	108	107	53

주: 조세지출액은 비과세 이자소득금액 추정치에 이자소득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

(3) 추계 결과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2033년 동안 총 540억원(연평균 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7년 1~6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신규 가입한 자는 2028년 7월~12월에 적금이 만기 해지되므로, 2028년 세수효과는 연간 조세지출액의 50%만 반영

6) 연중 12개월동안 만기 해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표 32]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소득세, 2028~2033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91조의19)	-55	-109	-108	-108	-107	-53	-540	-90

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제92조)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임
 -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각각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
 - 동 제도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 도입었으며,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됨
- 동 제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 실적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하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혼인세액공제 신청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계

(2) 추계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을 산출하고, 동 비중을 2025년 혼인건수에 적용하여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한 후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수는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2012~2022년 동안 매년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혼인건수의 변화 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5년 실적을 활용
 -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은 2024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은 46.7%로 나타남

○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

[표 33] 혼인신고 및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 2024년

(단위: 명, %)

혼인신고 건수(A)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혼인신고자 대비 비중 [B/(A×2)]
	근로소득자 ¹⁾	종합소득자 ²⁾	계(B)	
222,412	118,131	89,786	207,917	46.7%

주: 1)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있는 신청 인원에서 종합소득세 중복 신고인원(21,506명)을 제외한 수치임. 참고로,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5,689명으로 나타남

2)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자료로, 결정세액이 0 이하인 인원(248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2025)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혼인신고자 수에 앞서 산출한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을 곱해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하고,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단위: 명, 억원)

2025년 혼인신고 건수 (A)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 (B)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C=(A×2)×B]	공제액 (D)	세수효과 (-C×D)
240,326	46.7%	224,664	50만원	-1,123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2025)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2027년 1,123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5,617억원(연평균 1,1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합계	-1,123	-1,123	-1,123	-1,123	-1,123	-5,617	-1,123

- (징수기준) 소득세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1,123억원 등 2028~2032년까지 5년간 총 5,617억원(연평균 1,1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기준): 소득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92조)	-1,123	-1,123	-1,123	-1,123	-1,123	-5,617	-1,123

차.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2)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
-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500원(최대 200만원)
 - － 2025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용역제공자 1인당 공제금액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
 -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표 3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 2022~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p
조세지출	신설	0.05	0.09	0.50	0.60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2025년 잠정실적(0.6억원)을 기준으로 향후 조세지출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고정되어 있어 조세지출 증가가 제한적이므로, 2025년 수준의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추계 결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는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3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4조의32)	-0.60	-0.60	-0.60	-0.60	-0.60	-3	-0.6

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3)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제122조의3 제1항)
 - 대상: 성실사업자⁷⁾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⁸⁾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공제율: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등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22조의3 제3항)
 -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7)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 등)

8)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공제율: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감면 실적) 동 특례의 감면실적은 2021년 322억원에서 2025년(잠정치) 377억원으로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표 39]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p
조세지출	322	334	357	375	377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2025년 잠정실적(377억원)을 기준으로 향후 감면액이 연평균 4.1%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2~'25년 기간동안 연평균 4.1% 증가

(3) 추계 결과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426억원 등 5년간 총 2,310억원(연평균 4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0]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2조의3)	-426	-443	-461	-480	-500	-2,310	-46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세제분석2과	박지원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
박지원	02-6788-4839	jwpark1209@assembly.go.kr